

의안번호	2201371
의 퇴 인	이재강 의원
회 답 일	2024. 7. 22.
추 계 번호	24B16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제3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u>기구류(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한다)</u>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함 ※ 초경량비행장치의 정의 중 “기구류”를 “기구류(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한다)”로 개정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3호)

-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정의 중 “기구류”를 “기구류(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것임

-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법 제3조의 기구류를 유인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繫留式)기구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은 2킬로그램보다 가벼운 무인자유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구류에 포함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4.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개정안에 따라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의 무게 2킬로그램 기준을 해제할 경우, 무게 2킬로그램 이하의 무인자유기구도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허가(제129조제2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제127조) 등의 대상이 되어, 해당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사람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11조제1항1)에 따른 서식의 비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308조제2항2)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초경량비행장

- 1)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11조(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기구의 등급·수량·용도 및 식별표지
3. 비행장소 및 회수장소
4. 예정비행시간 및 회수(완료)시간
5. 비행방향, 상승속도 및 최대고도
6. 고도 1만 8천미터(6만피트) 통과 또는 도달 예정시간 및 그 위치
7. 그 밖에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참고가 될 사항

- 2)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기구류 정의 변경으로 인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제도 영향

구분	영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허가(법 제129조)	대상에 추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법 제127조)	대상에 추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법 제122조)	대상 아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법 제124조)	대상 아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법 제125조)	대상 아님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 시행 시, 지방항공청장은 무게 2킬로그램 이하의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허가 및 비행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업무가 증가할 수 있고, 인력 증원 등 조직 확대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증가할 비행허가 및 비행승인 신청 건수를 예측할 수 없어 증가하는 업무량 및 필요 증원 인력의 수 등을 예측할 수 없음
 -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의 무게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이동용·행사용 소형풍선, 풍등 등 모든 기구류가 초경량비행장치 제도권으로 포함될 예정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